

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10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이 조례는 현재 영구임대주택만 지원하던 공동관리비를 영구임대주택

외에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주택·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.

「장기임대주택법」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, 법제3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「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」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, 시설개선 지원, 관리비 지원, 경제역량 강화,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현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시비와 구비를 매칭(시:구=42%:58%)하여 공동사용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영구임대주택 외에도 저소득,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주거복지 실현이 필요합니다. 영구임대주택은 약 2만2천호이며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주택·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

면 약 7만호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

<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('22.12.기준)>

(단위 : 호수)

영구임대	국민임대	행복주택	공공임대	재개발임대	주거환경임대	합계
22,672	31,278	16,023	17,432	67,981	1,963	157,349

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